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ACE 코리아밸류업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ACE 코리아밸류업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ACE 코리아밸류업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8월 1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제한없음)
7. 모집(매출) 기간 (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8.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서 상장 이후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및 매도호가 공급을 통하여 원활한 시장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나, 거래량 부족, 장중 괴리율 확대,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매매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5.12.31)

한국투자 ACE 코리아밸류업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EF982)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되는 주식가격하락위험, 투자신탁 보수나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추적오차 발생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투자 ACE 코리아밸류업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 × 10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대상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대부분을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규 편입 예정종목, 개별주식선물 등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선취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 참가 회사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0900	0.0050	-	0.1942	20	41	63	110	248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

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5.12.31	2023.01.01~ 2025.12.31	2021.01.01~ 2025.12.31	
투자신탁	2024.11.01	93.12	-	-	-	71.36
비교지수	-	89.43	-	-	-	67.53
수익률 변동성	2024.11.01	93.12	-	-	-	71.36

(주1)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 ×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종훈	1984	책임 (수석)	22	70,749	-	-	225.97	81.92	11년 1개월
전하영	1994	책임 (책임)	16	15,319	-	-	225.97	81.92	11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

	위험	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 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리아밸류업 지수와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종목을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시장상황(매매제한 등)이 발생할 경우 구성종목 중 일부를 편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종목 비중을 달리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지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 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납입자산내역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방법을 실행할 것이지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과 때로는 추적오차의 정도가 상당 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관련된 투자신탁 보수나 제반비용(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상장수수료 등)은 순자산가치를 감소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추가설정, 환매, 종목 편출·입 및 비중조정시 소규모,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편입한 종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초지수 구성종목 중 일부(저유동성, 재무요건 미달 종목 등)를 편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	환매 방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매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결제)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해당사항 없음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번호 : 02-2055-5555 / 인터넷 홈페이지 : ki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 없음
효력 발생일	2026년 8월 13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ACE 코리아밸류업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F98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거나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하지 않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제한없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 요건

1. 펀드규모 : 상장예정인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지정참가회사 등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나.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다.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유가증권시장에 다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일부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6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2)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전부가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3. 기초자산 :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나. 가목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시장
      (2) 법시행령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3)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4)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4. 자산구성방법 :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한다.
      (1)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2)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나.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다. 상장지수펀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3)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4)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5)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 법 제16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2)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다.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담보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2) 담보비율, 담보의 정산 등 담보자산의 관리 방법

(3)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존속기한 :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이 경우 그 내용(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존속기한을 말한다)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7. 지수 등 이용계약 :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8. 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회사주권의 등록에 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 제3항 제1호, 소송 등에 관한같은 항 제4호,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장폐지 요건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한다)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4.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 (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 (2)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 (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마.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 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주 1)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30 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주 3)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ACE 코리아밸류업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F98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24년 11월 01일	투자신탁 최초설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대표전화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6.06.30 기준]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종훈	1984	수석	22	70,749	-	-	225.97	81.92	11년 1개월

<이력>
-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KAIST 경영공학 석사
- 2012.02 ~ 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AI운용본부, Beta운용본부, Multi전략본부, ETF운용본부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	운용	운용역	운용사	

			자기구 수(개)	규모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전하영	1994	책임	16	15,319	-	-	225.97	81.92	11개월

<이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 빅데이터사이언스 복수전공
- 2021.09 ~ 2023.05 : 골드만삭스증권 Operations Division
- 2023.05 ~ 2024.12 : 한화자산운용 Equity운용본부 퀀트운용팀
- 2025.01 ~ 2025.12 : 한화자산운용 솔루션운용본부 멀티에셋운용팀
- 2026.01 ~ 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	-	-	-	-	-	-	-	-	-

<이력>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종훈	-	-
책임운용전문인력	전하영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박지영	2024.11.01 ~ 2026.04.15
전하영	2026.04.16 ~ 2026.08.12
이종훈, 전하영	2026.08.13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	-
(주1)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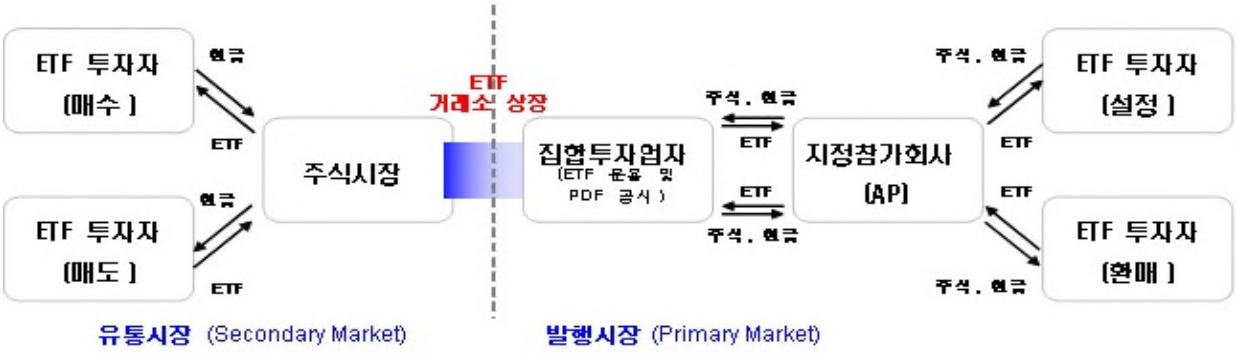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주식	60%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

		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등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10%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7조 제2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주식・채권 관련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장외 파생상품	주식・채권 관련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주 1)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주 2)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3)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u>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u>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	

	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간
	-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납부자산 구성내역 제한	-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만, 신탁계약서 제17조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 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 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대상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대부분을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규 편입 예정종목, 개별주식선물 등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신탁재산내 운용종목을 교체 또는 조정하게 됩니다.
  - ㅇ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 ㅇ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시가 비중 변동시
  - ㅇ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유동비율변경 등으로 인한 시가 비중 변동시
  - ㅇ 신탁재산내 구성종목의 부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ㅇ 기타 이상과 같은 사유 등에 준하는 중요한 사유 발생시

■ 추적오차 관리방안

-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추적대상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편입 종목수 조정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나,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ㅇ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제반 비용(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상장수수료 등)은 순자산가치를 감소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ㅇ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ㅇ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교체나 비율변경 등은 신탁재산내역을 조정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ㅇ 신탁재산내 구성종목 중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 × 100%]

■ 비교지수 지정 사유

ㅇ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서상 주식 최고편입비율을 적용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

ㅇ 지수개요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한국 증시에서의 기업가치 중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수이며, 시장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요건과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0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ㅇ 지수산출기관 : 한국거래소

○ 산출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24년 1월 2일. 1,000pt

○ 지수 유니버스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보통주)

※ 편입 제외 종목

-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 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인 종목
- 심사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최근사업연도 자본잠식 종목
- 신규상장일(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일 포함)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다만, 코스닥시장에서 이전 상장한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종목은 심사대상종목에 포함)

○ 종목 선정기준

(1) 1차 선정 (시장대표성 기준)

- 유니버스 종목 중 일평균시가총액 상위 400위 이내인 종목

(2) 2차 선정 (수익성 & 주주환원 기준 모두 충족)

- 수익성 기준 :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및 합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아닌 종목
- 주주환원 기준 :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소각을 실시한 종목

(3) 3차 선정 (시장평가 기준)

-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PBR의 순위를 2차 선정된 종목수로 나눈 값(PBR 순위비율)이 50% 이내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PBR의 산업군 내 순위를 해당 산업군 내에서 2차 선정된 종목 수로 나눈 값(PBR 산업군 순위비율)이 50% 이내인 종목

(4) 4차 선정 (자본효율성 기준)

-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ROE 값의 순위를 해당 산업군 내에서 2차 선정된 종목 수로 나눈 값(ROE 산업군 순위비율)이 낮은 순으로 100종목을 선정

○ 구성종목수 : 100종목

○ 지수산출방식 :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한 종목당 최대 투자비중 15%)

○ 종목교체기준 : 정기변경 연 1회 (6월)

※ 지수산출시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배당금 등의 수익률은 포함하지 않는 지수(Price Return Index)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수에 관한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수산출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ETF) 및 기초지수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홈페이지주소	비 고
지수관련정보	https://index.krx.co.kr/	지수발표기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ETF관련 일반정보 PDF내역	https://www.aceetf.co.kr	ACE ETF 전용 홈페이지
	http://data.krx.co.kr/contents/MDC/MDI/mdiLo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ader/index.cmd?menuId=MDC0201030101	홈페이지

※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이

[2019.06 ~ 202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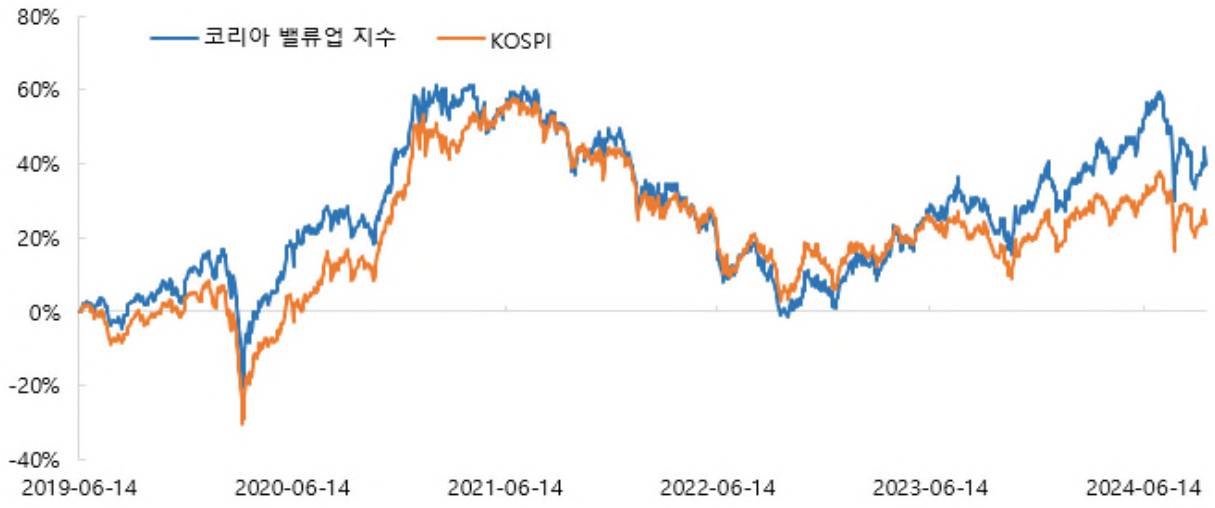

※ 출처 : 한국거래소

※ 상기 지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 펀드런 등 유동성 리스크 확대시 당사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합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에서는 대량환매규모 및 지속수준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를 주의/경계/위기/진정 4단계로 구분하고, 유동성 체크, 펀드런 대응팀 구성 등 각 단계별 현상에 따른 방안을 구축하여 대응합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

	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 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거래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서 유동성공급자를 통하여 매수・매도 호가공급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 의 장중 실시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량이 낮은 ETF라도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매도 호가에 따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주문량의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극단적인 국면에서는 유동성공급 호가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TF 매매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 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RP 매입 위험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의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적인 오류 및 오퍼레이션 오류로 인해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 타이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운용을 저해하여 투자신탁 이익의 최대화 또는 손실의 최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 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코리아밸류업 지수와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종목을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시장상황(매매제한 등)이 발생할 경우 구성종목 중 일부를 편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종목 비중을 달리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 방식의 대폭변경 또는 중단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전부해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지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 비용의 최소화, 추적 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납입자산내역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 방법을 실행할 것이지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과 때로는 추적

	오차의 정도가 상당 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관련된 투자신탁 보수나 제반비용(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상장수수료 등)은 순자산가치를 감소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추가설정, 환매, 종목 편출·입 및 비중조정시 소규모,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편입한 종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초지수 구성종목 중 일부(저유동성, 재무요건 미달 종목 등)를 편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와의 상관관계 저하 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은 일간단위로 기초지수와 투자신탁의 성과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이 일간단위로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와 투자신탁의 일간단위 성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수익률의 일정배율에 해당하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상승 혹은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같은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실시간추정 순자산가치 (iNAV)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한국 유가증권시장 매매시간동안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실시간순자산가치(i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장중 실시간추정순자산가치(i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 iNAV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 Indicative Net Asset Value) : ETF 의 시장가격이 기초지수의 성과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ETF NAV 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표입니다. iNAV 는 각 증권회사 HTS, MTS 등 ETF 거래가능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격제한 폭 차이에 따른 괴리발생 위험	추적대상지수의 기초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이 투자신탁이 거래되는 시장과의 매매제도 차이(가격제한폭)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분이 당일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거래 가격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인 기준가격과 시장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거래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적대상 지수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추종하는 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추적대상지수의 산출이 불가할 경우, 타 지수제공기관이나 당사에서 산출한 추적대상지수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의 변경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적오차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금성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상장된 이후

제약위험	유동성공급자가 시장거래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호가 공백이나, 거래부진 등의 사유에 따른 실시간 매매의 제약 등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가격 괴리 위험	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는 통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거나, 해외지수를 추종함에 따라 비교지수가 국내시장 개장시간과 다르게 변동하는 등 경우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LP 헷지 비용(대차수수료 등) 증가 또는 불완전 헷지 바스켓 구성 등에 따른 장중 스프레드 확대 및 괴리율 발생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ETF 괴리율 일정수준 이상시 신고 의무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국내 기초자산만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괴리율이 1%(그 밖의 종목을 추적하는 경우는 2%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한다)가 0.9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u>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가.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u> <u>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u> <u>(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u>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4.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 (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 (2)에 따른 등급이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 (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마.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 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위험	1. 기초자산 가격 변동위험 파생결합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 위험 발행회사가 파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익조건 변경 위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상했던 손익구조 등이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1) 기초자산의 변경 또는 행사가격, 기준가격 결정일(만기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의 가격, 기타 지급일 등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2) 기초자산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기초자산의 산출이 폐지 또는 단절되는 경우 3)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4)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초자산 등의 정규매매마감시각 이전에 거래를 마감하여 당해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 5)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6)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수익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기종결 위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본 파생결합증권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또는 본 파생결합증권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초자산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이 한국거래소에서의 상장이 폐지되어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발행회사가 임의로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 이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소규모 펀드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

	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도자산등의 평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무수탁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

위험	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설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ETF 투자에 따른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을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 증분과 매매이익 중 작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1 일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 받으며, 보유기간 과세체계에서는 매매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매매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 년 동안의 매매 건별로 이익발생시점에서 계산한 과표의 합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기준을 넘어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을 추구하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로서 추적대상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한 투자수익률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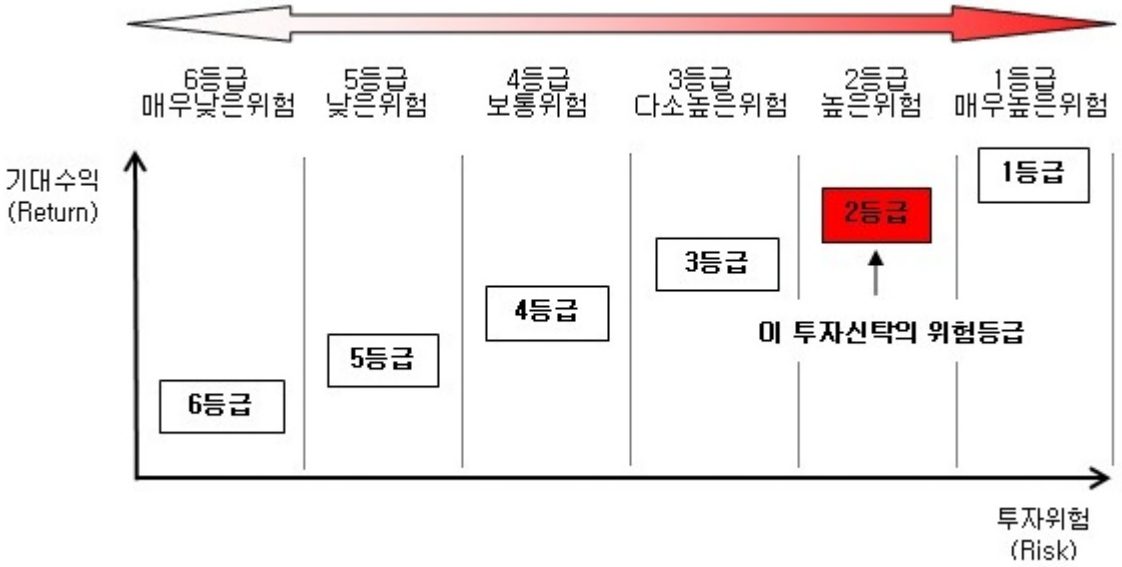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주)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위험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①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투기등급채권 등 자산, 파생상품,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투기등급채권 등 자산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무등급 포함), 투기등급CP(B+이하, 무등급 포함)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②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③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은 국내 신용등급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초자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담보수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6.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7.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8.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 설정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u>설정단위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u>로만 가능합니다.

○ 매입에 의한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u>3영업일</u>에 수령합니다.

○ 설정청구는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설정단위 (Creation Unit)

-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단위입니다.

  ㅇ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정산금액 등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정산금액 :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말합니다.

  ㅇ 정산일 : 투자자는 상기 정산금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설정요청일에 발생하게 되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내역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 정산금액의 발생은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정산금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ㅇ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ㅇ 익일에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등 ⇒ 그러나, 상기 조치가 정산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수익증권의 설정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부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수익증권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당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투자자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함)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함)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부(이하 "대납현금"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와 지정참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⑤ 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투자증권을 매매(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함)하는 등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

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등의 매매를 한 경우

⑩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수표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부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수표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 제1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5) 수익증권의 설정절차

- 설정청구일 전영업일 (T-1일)
  - ㅇ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 설정청구일 (T일)

  ㅇ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기 위한 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ㅇ 만일 투자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예탁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ㅇ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설정일(T+2일)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설정일(T+2일)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 설정일 (T+2일)

  ㅇ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ㅇ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입고를 설정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집합투자업자는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 신청을 합니다.

※ 일자별 수익증권의 설정절차

일자	설정청구일 전영업일 (T-1일)	설정청구일 (T일)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설정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설정자금 납입 정산금액의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승인,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투자자계좌에 수익증권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공고 (한국거래소등)	설정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전자등록)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 신청
전자등록기관		설정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등의 납부 확인

나. 환매

※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하지 않음)
		O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와 동일합니다(매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수령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ㅇ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당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⑨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⑩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유가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⑫ 제11항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를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3)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 환매청구일 전영업일 (T-1일)
  - ㅇ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 환매청구일 (T일)
  - ㅇ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을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 ㅇ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ㅇ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일 당일 종가기준으로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 환매청구일 당일 발표한 납입자산내역(PDF)의 평가액의 차액을 수정 정산금액(수정BA)으로 산출 후 이를 바탕으로 결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을 통해 관련기관에 통보합니다.
  - ㅇ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환매일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 환매일 (T+2일)
  - ㅇ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ㅇ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

고, 수익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ㅇ 집합투자업자는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 신청을 합니다.

※ 일자별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일 자	환매청구일 전영업일 (T-1일)	환매청구일 (T일)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환매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승인, 수익자 통보	신탁업자로부터 환매자산 인수,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출고 및 환매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공고 (한국거래소 등)	환매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말소의 전자등록)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 신청
전자등록기관		환매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환매자산 이체 및 내역 확인

(4)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시 자산의 이체방법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규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금전 납입 방식의 수익증권 설정·해지의 경우 한국은행망을 통한 대금결제를 사용하며 지준일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직접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해지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해지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지정참가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한국거래소(www.krx.co.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지분증권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 제20조에 따른 적용방법(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 다만,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실물자산등	- 시가 또는 기준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 1. 부동산(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포함) 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나.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 : 매 1년마다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 다만, 수익증권이 상장되지 않았으며,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

	한 가격(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큰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액과 전년도 장부가격의 괴리가 15%미만 발생 시 전년도 장부가격으로 평가 2) 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작은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 2. 실물자산 : 취득가격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평가담당 총괄본부장, 운용담당 총괄본부장, 마케팅담당 총괄본부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위험관리담당부서장 및 투자지원담당
업 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75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4, 7, 10월의 마지막일까지
지정참가회사보수	0.0050	
신탁업자보수	0.00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050	
총보수	0.0900	
기타 비용	0.1042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1942	
(동종유형총보수·비용)	-	-
증권 거래비용	0.0234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1.01 ~ 2025.12.31]
*기타비용 예시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직전 회계연도 기타비용 금액 : 17,294,370 원]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1.01 ~ 2025.12.31]
*증권거래비용 예시 : 증권·선물·옵션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 금액 : 3,882,765 원]

(주 3)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대여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발생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	41	63	110	248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 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합니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 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③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 제234조 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금액 등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는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산 시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함) 과세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환매 및 매도 또는 해지 및 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함)시 배당소득금액

1. 환매시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함) 과세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2. 매도시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

* 실제 매매차익 : 매도가격 - 매수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기타 사항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ETF를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ETF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ETF는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이동평균법 :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2기 (2025.01.01 ~ 2025.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기 (2024.11.01 ~ 2024.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재무상태표			
항목	제 2 기	제1기	-
	2025.12.31	2024.12.31	-
운용자산	15,243,588,680	21,829,579,201	-
증권	14,260,664,009	21,794,371,740	-
파생상품	0	0	-
부동산/실물자산	0	0	-
현금 및 예치금	982,924,671	35,207,461	-
기타 운용자산	0	0	-
기타자산	41,792,614	86,298,347	-
자산총계	15,285,381,294	21,915,877,548	-
운용부채	0	0	-
기타부채	2,591,543	6,287,018	-
부채총계	2,591,543	6,287,018	-
원본	8,339,928,000	22,566,864,000	-
수익조정금	-2,053,794,788	312,879,330	-
이익잉여금	8,996,656,539	-970,152,800	-
자본총계	15,282,789,751	21,909,590,530	-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목	제 2 기	제1기	-
	(2025.01.01 ~ 2025.12.31)	(2024.11.01 ~ 2024.12.31)	-
운용수익	9,676,253,515	-962,646,955	-
이자수익	8,368,483	673,337	-
배당수익	515,289,241	82,549,224	-
매매/평가차익(손)	9,152,595,791	-1,045,869,516	-
기타수익	757,299	95,088	-
운용비용	16,844,963	4,110,697	-
관련회사 보수	14,111,428	4,049,151	-
매매수수료	2,733,535	61,546	-
기타비용	18,128,946	3,490,236	-
당기순이익	9,642,036,905	-970,152,800	-
매매회전율	13.41	15.60	-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2 기 568357 원, 1 기 95088 원, 0 기 0 원 발생)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2 기 0 원, 1 기 0 원, 0 기 0 원 발생)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상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기타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주,백만원,%]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1,989	1,631	34,521	2,129	15,873	13.00	13.02

(주 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3,758	1	0.03	8,970	3	0.03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75	0	0.03	-	-	-
장내파생상품	11,785	2	0.02	-	-	-
장외파생상품	-	-	-	-	-	-
합계	15,618	4	0.02	8,970	3	0.03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2기 (2025.12.31) 금 액		제1기 (2024.12.31) 금 액		금 액	
자 산		0		0		0
운 용 자 산		0		0		0
현금및예치금		982,924,671		35,207,461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463,711,934		35,207,461		0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519,212,737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14,260,664,009		21,794,371,740		0
1. 지분증권	14,182,650,310		21,794,371,74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78,012,000		0		0	
4. 기타유가증권	1,699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및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작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타자산		41,792,614		86,298,347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4,710,000		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863,656		272,327		0	
4. 미수배당금	24,031,410		82,231,224		0	
5. 기타미수입금	12,187,548		3,794,796		0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15,285,381,294		21,915,877,548		0
부 채		0		0		0
운용부채		0		0		0
1. 옵션매도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591,543		6,287,018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2,591,543		6,219,247		0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0		67,771		0	
부 채 총 계		2,591,543		6,287,018		0
자 본		0		0		0
1. 원본	8,339,928,000		22,566,864,000		0	
2. 이월잉여금	6,942,861,751		-657,273,470		0	
(발행좌수 당기 : 850,000 좌	이익잉여금	8,996,656,539		-970,152,800		0
전기 : 2,300,000 좌	수익조정금	-2,053,794,788		312,879,330		0
전전기 : 0 좌)						
(기준가격 당기 : 17,980 원						
전기 : 9,526 원						
전전기 : 0 원)						
자 본 총 계		15,282,789,751		21,909,590,530		0
부채와 자본총계		15,285,381,294		21,915,877,548		0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2기 (2025.01.01 ~ 2025.12.31)		제1기 (2024.11.01 ~ 2024.12.31)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9,677,010,814		-962,551,867		0
1. 투자수익		524,415,023		83,317,649		0
1. 이 자 수 익	8,368,483		673,337		0	
2. 배당금 수익	515,289,241		82,549,224		0	
3. 수수료 수익	757,299		95,088		0	
4. 임대료 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0,376,447,690		788,491,432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9,030,575,306		788,491,432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2,814,185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343,056,50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이익	1,699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223,651,899		1,834,360,948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393,720,976		1,834,360,948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3,41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830,019,75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대손상각비	0		0		0	
8. 기타차손	107,763		0		0	
운 용 비 용		34,973,909		7,600,933		0
1. 운용수수료	12,452,055		3,572,908		0	
2. 판매수수료	829,413		238,058		0	
3. 수탁수수료	829,960		238,175		0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수수료	0		0		0	
6. 기 타 비 용	20,862,481		3,551,782		0	
당기순(손실)이익		9,642,036,905		-970,152,800		0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11,343,573		-421,806		0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1) 투자신탁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0	219	0	7	0	166	0	153
2024.11.01 ~ 2024.12.31	0	0	0	314	0	85	0	219
-	-	-	-	-	-	-	-	-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

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 2025.01.01~ 2025.12.31	최근 2년 2024.01.01~ 2025.12.31	최근 3년 2023.01.01~ 2025.12.31	최근 5년 2021.01.01~ 2025.12.31	설정일 이후 2024.11.01~ 2025.12.31
투자신탁	93.12	-	-	-	71.36
비교지수	89.43	-	-	-	67.53
수익률변동성(%)	93.12	-	-	-	71.36

주 1) 비교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수 ×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4년	최근 5년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4.12.31	2023.01.01~ 2023.12.31	2022.01.01~ 2022.12.31	2021.01.01~ 2021.12.31
투자신탁	93.12	-	-	-	-
비교지수	89.43	-	-	-	-

주 1) 비교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수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5.12.31 현재 / 단위: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12	0	0	0	0	0	0	0	0	5	3	119
	(93.6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12)	(2.22)	(100.00)
합계	112	0	0	0	0	0	0	0	0	5	3	119
	(93.6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12)	(2.22)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5)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별 종목을 해당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여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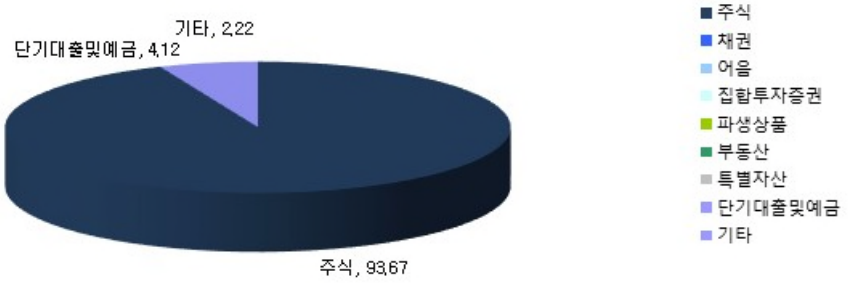

1) 국내주식 업종별 구성현황

[2025.09.30 현재 / 단위 : 억원,%]

NO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40	(35.84)
2	기타금융	21.8	(19.56)
3	운송장비·부품	21.4	(19.19)
4	음식료·담배	3.4	(3.09)
5	보험	3.1	(2.79)
6	통신	3	(2.71)
7	운송·창고	2.9	(2.64)
8	증권	2.1	(1.90)
9	일반서비스	2	(1.76)
10	기계·장비	1.7	(1.56)
11	기타	10	(8.96)
합계		111.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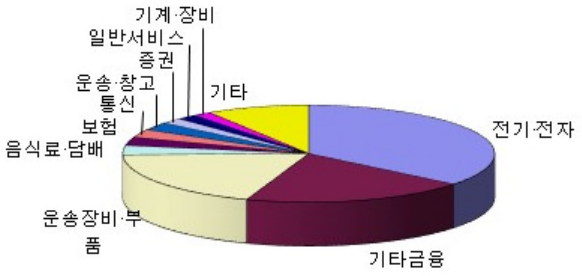

2)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2025.09.30 현재 / 단위: 억원,%]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개별주식선물매입	7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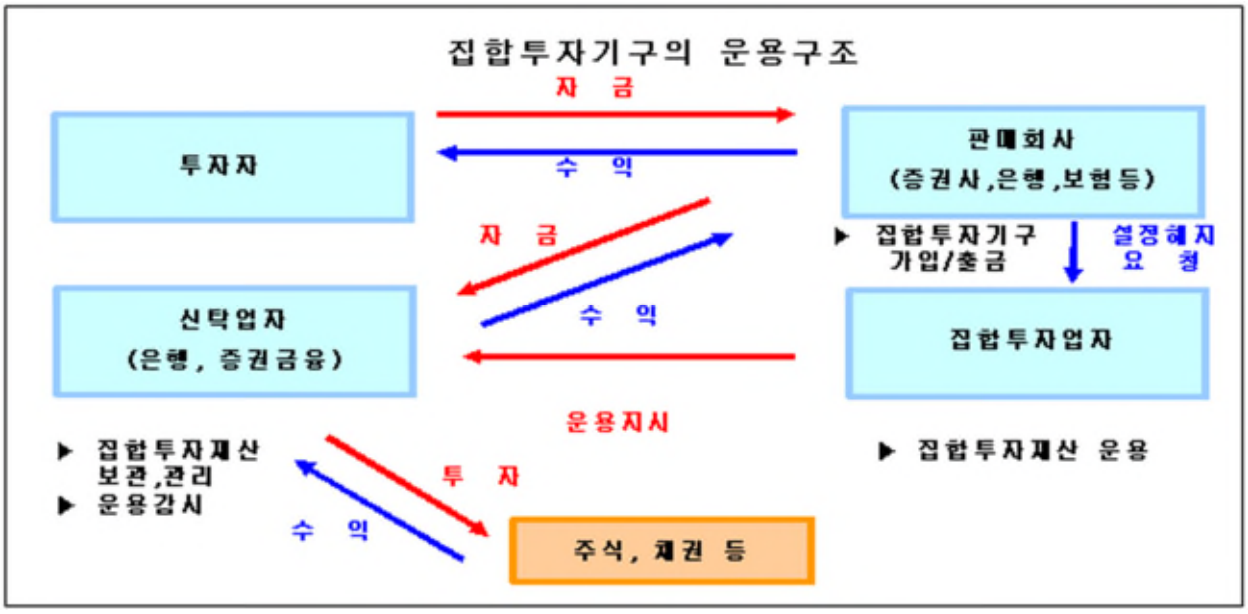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연락처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회사 연혁	- 1974.07.16 : 한국투자신탁 설립 - 2000.06.04 : 한국투자신탁 증권사 전환 - 2000.06.28 : 한국투자신탁운용 분리 설립 - 2005.04.01 : 동원금융지주그룹 편입 (상호변경:한국투자금융지주) - 2005.07.04 : 동원투자신탁운용㈜를 흡수합병 - 2008.10.02 : 한국투자운용지주 편입 - 2012.07.19 : 한국투자증권 편입 - 2022.07.29 : 물적분할을 통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설립
자본금	660.5 억원
주요주주 현황	한국투자증권(100%)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업무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25기 (2024.12.31)	제24기 (2023.12.31)	계정과목	제25기 (2024.1.1.~ 2024.12.31.)	제24기 (2023.1.1.~ 2023.12.31.)
현금및예치금	39,129	44,193	영업수익	128,926	110,985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9,469	48,542	영업비용	89,660	80,50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982	2,020	**영업이익**	**39,266**	**30,485**
관계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122,315	91,631	영업외수익	64,407	12,138
대출채권및수취채권	892	955	영업외비용	2,984	386
유형자산	1,909	4,176	**법인세차감전**	**100,689**	**42,237**
기타자산	30,535	88,381	법인세비용	12,741	9,775

자산총계	286,231	279,898	당기순이익	87,948	32,462
예수부채	32,442	37,580			
기타부채	40,342	26,748			
부채총계	72,784	64,328			
자본금	66,050	66,050			
자본잉여금	10,735	10,7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8	579			
이익잉여금	136,194	138,206			
자본총계	213,447	215,570			

라. 운용자산 규모

[2025.12.31 현재 / 단위:억]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투자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186,969	168,917	29,209	-	92,194	30,058	72	36,641	44,819	63,861	652,74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 길 20 (연락처 : 1599-8000, www.shinhan.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여의도동 23-9) (연락처 : 02-2180-0400,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www.koreaa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02-785-1410 www.egap.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현황, 정리이행계획, 정리실적을 업무보고서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 5%이하인 경우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제3호의2 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는 사항
  2.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한국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12,609
한국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선물	11,785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의 내역입니다.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의 내역입니다.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기구간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가. 지분증권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수익률기여도 및 기타기여도 등을 평가 나.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과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투자금 :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합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거래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